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23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,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,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10조제3항에 의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그간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하였음
- 다.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개요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(서울혁신파크 內)
 - 시설규모 : 총 993.58㎡(1동 3층, 8동 1층 일부)
 - 1동 3층(707.49㎡) : 사무공간, 회의실, 정보자료실 등

- 8동 1층(286.09 m^2) : 강의실, 회의실
- 소요예산 : 4,067백만원(2021년 예산)

나. 위탁사무 내용

-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-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
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·홍보·전파
-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
-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경위

- '12. 5. 2. :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
- '12. 8. 23. :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·수탁 협약
 - 선정방법 : 공개모집, 수탁기관 : 사단법인 마을
- '15. 8. 23. :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-1차)
- '18. 8. 23. :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-2차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마. 민간위탁 필요성

-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매개체(중간지원조직)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-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며,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필요

사. 위탁기간 : 3년('21. 8. 23. ~ '24. 8. 22.)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자. 민간위탁운평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)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3.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
4.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5.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6.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·홍보·전파
7.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
8.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제4조(지원 범위)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
2.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
3.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4.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 편성(4,067백만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윤미숙 (☎2133-6340)